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 신 종 익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1판1쇄 인쇄/ 2006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6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값 3,000원 / ISBN 89-8031-368-3

Contents

요 약

I. 문제 제기 / 13

II. 준조세의 실태 / 16

1. 종류와 규모 / 16
2. 준조세의 귀속과 사용 / 19
3. 준조세의 부담 정도 / 21
4. 외국의 준조세 실태 / 22
5. 준조세 심사 및 정비관련 제도 / 23

III. 준조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 / 25

1. 부과요건과 사용내역의 투명성: 조세와 비교 / 26
2. 준조세의 경쟁제한성: 정부산하기관 및 법정단체의 경우 / 29
3.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 35
4. 근거규제의 적절성: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의 경우 / 40

IV. 준조세 관련 제도개선 방안 / 43

1. 준조세 정비가 부진한 이유 / 43
2. 준조세에 관한 제도정비 방안 / 44

참고문헌 / 48

<부 록> / 51

I.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준조세, 국민과 기업에 큰 짐

□ 준조세, 법인세 규모 육박

-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준조세의 수와 규모를 줄이려고 했지만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가 계속 증가
 - 부담금, 사회보험료, 강제성 기부금이 '03년에 23조원을 상회하여 법인세 규모에 육박
 - 과징금, 수수료, 협회비 등의 준조세는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투명성이 낮음.
- 부담금의 75%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며, 나머지는 지자체와 정부산하기관에 귀속
 - 준조세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으로, 이들의 정비 없이는 준조세 축소에 한계
- 준조세는 국민과 기업에 엄청난 부담
 - 중소기업들은 평균 1억2천5백만원에 가까운 준조세를 부담하여 세금보다 25.3%나 많았음. 이는 중소기업 평균 당기 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됨.
 - 대기업은 업종에 따라 다르나, 세금의 28%를 부담
 - 국민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준조세의 일부인 사회보장기여금(각종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군인 및 공무원 연금 등)은 GDP의 5.3%에 달하여 모든 준조세를

포함한 총조세부담률은 국민부담률 25.1%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 준조세,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근본원인

- 우리나라 재정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 기금 57개 등 '77개의 지갑'으로 되어 있음.
- 재정이 77개의 칸막이로 운영된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SOC 확충 등 필요한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데 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남아도는 등 재정효율성은 떨어지고 재정의 투명성은 약함.
- IMF도 특별회계와 기금을 반드시 통합할 것을 정부에 권고

□ 준조세,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위배

○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위배

- 현행 법정준조세 중에는 부과요건과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부과요건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음. 또한 부담금을 제외하면 법정준조세의 사용 내역은 거의 공개되지 않음.

○ 엄격하게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부담금은 위헌으로 판시

- 헌법재판소는 부담금 등의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횟수 등이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판시

- 교통안전분담금은 부과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에 위헌결정했으며, 택지초과소유상한부담금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택지소유한도를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1999년 위헌결정을 내렸음.
 - 또한,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납입의무자, 모금대상 시설, 모금액의 상한과 산정기준 등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유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 밖에 학교용지부담금(2005년), 문예진흥기금 납입금(2003년) 등이 위헌결정을 받았음.
 -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100여 개의 부담금은 부과요건, 산정기준과 방법, 부과요율, 설치목적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음.
- 그러나 부과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법정준조세가 여전히 많음.
- 감사원은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부과대상과 판정기준의 미비, 부과기준의 모호성, 감경기준 불명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을 요구하였음.
 - 법제처는 2005년에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과징금의 부과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에 이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13개 법령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회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광물수입판매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14개 법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을 여전히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를 비롯한 77개 지자체가 2002년부터 2005년 5월 사이 법이 아닌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2,484억원의 준조세를 부과

○ 행정제재금으로서 과징금 규제의 근거 취약

- 하나의 기업행위에 대한 부처간 중복규제, 경제여건 변화로 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규제, 행위에 비해 규제강도가 지나친 규제, 국제기준이 아닌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징금은 그 근거가 취약
- 과징금은 본래 의무이행의 확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부당이득 환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등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재원조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주무부처의 행정처분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 준조세, 비효율적이고 경쟁제한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는 데 쓰여

- 법정단체나 정부산하기관들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나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림.
- 또한 진입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특히 경쟁이 취약한 엔지니어링, 안전검사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체시킴.

-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이들 기관의 기관장을 취임하여 기업활동에 간섭하므로 민간기업의 창의나 활력을 위축
- 각 부처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마련이나 정부간섭의 편의 등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굳이 법정단체로 설립하는데, 이는 헌법(119조)이 보장한 자유경쟁질서에 위배
- 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들은 정부사무의 독점적 수탁, 가격담합, 강제적인 회원가입, 형식적인 보수교육과 교육비 징수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이유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는 155개 사업자단체에 설립 및 가입강제 폐지, 등록업무의 회수, 보수교육의 폐지, 설립조건 개선 등의 개혁을 추진

II. 준조세 문제, 제도적 인프라와 공공부문 정비로 풀어야

□ 공공부문 축소가 궁극적 해결책

- 준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정부산하기관이 정리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의 상당수가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 또한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산하기관 등을 지원하는 각종 법률, 정부계획 및 규제를 정리하여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축소와 정부 개혁이 준조세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임.

□ 음지에 놓여 있는 준조세를 양지로 끌어내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해야

- 각종 법정준조세를 한 부처에 등록시켜 주무부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이 시급
- 동법에는 각종 법정준조세의 등록과 국회보고 및 공개, 준조세 신설 및 부과율 변경에 대한 심사, 정기적인 평가 등이 규정되어야 함.

- 정부산하기관과 법정단체의 기능과 예산, 성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
 - 이를 위해서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범위를 법정 준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과 사실상 정부에서 지배하는 산하기관으로 확대
- 과징금과 같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준조세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의 폐지 등 관련 규제의 질 향상이 시급함.
- 재정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관련 법제를 보완하여야 함.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시장경제 ISSUE PAPER-04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I. 문제 제기

기업이 연간 부담하는 준조세가 23조원을 넘어섰다.¹⁾ 이 규모이면 우리나라 세수의 15%이며, 법인세(25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99년에 비해 2배 늘어났는데, 세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준조세는 이보다 훨씬 많다. 23조원에는 부담금, 사회보험금, 강제성 기부금만이 포함된 것인데, 준조세에는 이들 3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들은 연간 1,100억원 규모의 '금융감독분담금'을 내며,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연간 400억원의 발행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이들 분담금으로 금융감독원을 운영한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수많은 법정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내며, 안전, 환경 등의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산하기관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업이 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받는 과징금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데, 이들도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기업이 부처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한 사안 중에서 과반수 정도는 법원에서 승소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과징금 중에 무리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1) 손원의 외, 『기업의 준조세부담과 정책방향』, 조세연구원, 2004. 12.

준조세 규모가 커지다 보니, 준조세에 관한 논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경감 측면으로 모아지고 있다. 기업은 준조세의 과중한 부담과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너무 과도하게 인상된다고 불만이다. 언론은 부담금 등이 많다고 ‘준조세 공화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학계에서는 준조세 중에 손금산입되는 것을 감안한 기업의 실제 부담에 관심을 보인다.

정부나 국회도 준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5년 12월)과 ‘부담금관리기본법’(2002년 1월)을 제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담금 신설이나 요율 상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택지초과소유상한부담금’과 같이 위헌소송이 제기된 일부 준조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준조세로 인한 문제는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부일까? 그리고, 일부 중복되는 준조세가 통폐합되면 준조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준조세에는 부담 외에도 중대한 문제들이 많다.

엄청난 규모의 특별회계(19개)와 기금(57개)은 물론, 수많은 정부산하기관과 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들은 준조세로 운영되는데, 이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계속되고 민간 활력은 떨어지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 준조세는 세금과 달리 부과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으며, 재정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한다.

준조세에 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중복적 준조세를 통폐합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며, 준조

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준조세 범위를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외에 법정단체의 회비, 과징금 등으로 넓히고, 기금 및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들과 연계하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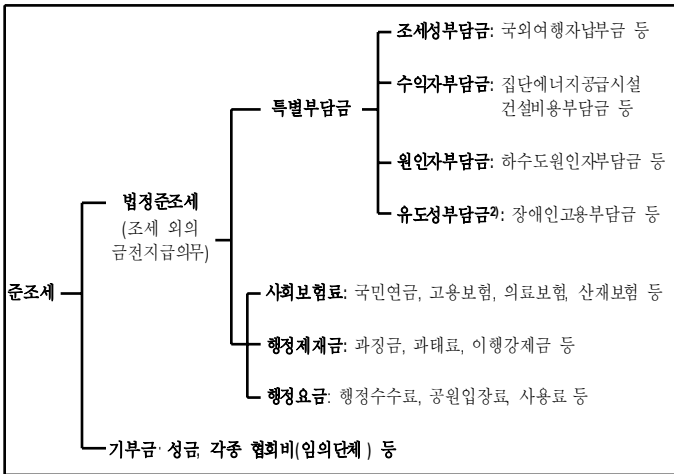
본 연구는 법정준조세의 전반적인 실태와 준조세의 진정한 문제를 파악한 후 시장경제 창달 측면에서 준조세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아울러, 준조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준조세의 실태

1. 종류와 규모

준조세는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준조세를 <표 1>과 같이 법정준조세와 기부금·성금으로 나누는데, 법정준조세는 법에 부과 의무가 규정되어 세금과 같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표 1> 준조세의 종류



자료: 기획예산처

2) 특별부담금 중에서 유도성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충당성부담금이라고 한다.

<표 1>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자단체 회비나 정부 위탁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산하기관의 사용료도 법정준조세로 볼 수 있다. 기부금, 성금,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는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이 반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비와 사용료 등 모든 법정준조세를 대상으로 한다.

준조세는 반대급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반대급부가 없는 준조세를 ‘협의를 준조세’라고 한다.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제금, 강제성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수료, 법정단체에 대한 연회비는 외견상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반대급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 의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마지못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징금 등의 행정제제금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대가(제재)이기는 하나, 준조세 부과 근거가 되는 규제가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규제개혁 대상이라면 협의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준조세는 종류가 많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크게 미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³⁾ 앞에서 언급한 23조원의 준조세 중에는 사회보험료가 61.7%로 가장 많고, 부담금은 38%이다.⁴⁾ '97년부터 7년간 기업은 부담금과 사회보험료로

3) 준조세와 관련된 법령의 수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 333건, 부과금 140건, 예치금 50건, 조성비 1,037건, 수수료 1,063건, 사용료 295건, 요금 280건, 과징금 237건, 이행강제금 23건, 가산금 184건, 과료 41건, 과태료 1,291건, 범칙금 33건, 분담금 84건, 벌금 836건, 출처: 김재광 외,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수립』, 법제연구원, 2004. 10.

4) 2004년에 부담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기획예산처,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 2005. 6. 28).

108조9,600억원을 납부했으며,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는 연평균 5~6% 증가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이들 비중은 '97년의 13%에서 2003년에는 15.6%로 늘어났다.

협회의 준조세 중에서 대표적인 부담금은 102개이며, 그중 환경부가 24개, 건설교통부가 23개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 징수한 부담금 규모를 보면 국토개발분야가 4,860억원, 보건노동분야가 8,670억원,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이 2조4,216억원, 환경분야가 1조7,210억원이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보험료는 14조2,830억원이다.

<표 2> 부담금 신·증설 추이

(단위: 개)

	'61 ~ '69	'70 ~ '79	'80 ~ '89	'90 ~ '00	'01	'02	'03	'04
신 설 (환경 및 건설교통)	7 (5)	7 (2)	20 (8)	65 (32)	12 (10)	2 (-)	6* (1)	2 (1)
폐 지	-	-	-	1	9	1	8	-
누 계	7	14	34	98	101	102	100	102

주: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던 6개를 포함시킨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2005. 2.

부담금 이외의 주요 준조세를 보면, 방송사업자들이 내는 방송발전징수금이 연간 1,400억원,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1,110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이나 부당내부지원 등의 이유로 2000년에 2,256억원, 2003년에 1,4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05년 5월에 KT를 비롯한 통신회사들에게 1,2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통신위원회는 2005년에 SK텔레콤에 231억원, KT에 11억원, LG텔레콤에 27억원 등 총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수료, 회비, 과태료 등에 대한 통계는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다.

<표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추이

(단위: 건, 개사, 백만원)

	건수	사업자수	금액
1988	1	6	2,097
1992	9	15	3,375
1994	68	104	2,575
1996	22	65	16,275
1998	69	261	136,217
1999	102	238	143,653
2000	49	124	225,635
2001	81	225	157,427
2002	91	169	87,931
2003	37	100	149,712
2004	91	159	35,883
계	704	1,633	968,2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준조세의 귀속과 사용

준조세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주체나 용도가 다르다. 부담금은 전체의 54%가 중앙정부의 기금에 귀속되며, 특별회계에서 21%를 사용한다. 에너지, 환경개선, 등기, 우체국보험 등 7개의 특별회계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주 재원이다. 부담금을 많이 쓰는 분야를 보면 에너지 2조1,800억원(28.9%), 환경 1조1,400억원(15.2%), 보증(금융) 8,542억원(11.3%), 보건의료 8,061억

원(10.7%), 금융 6,987억원(9.3%) 등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부담금의 13%, 정부산하기관이 12%를 사용한다.

<표 4> 부담금의 귀속내용(2004년)

(단위: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합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액	54,231	21,086	7,840	5,662	11,596	100,415
비율(%)	54.0	21.0	7.8	5.6	11.6	100.0

자료: 기획예산처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하지만, 방송법, 석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과징금을 해당부처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주무부처에서 직접 운용한다. 최근에는 과징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징수한 과징금을 민간부문 지원이나 공공사업 및 행정업무 수행 등의 특정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표 5> 일반회계에 귀속되지 않는 과징금들

용도	근거법
특별회계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환경개선), 석유사업법(에너지지원), 주차장법(주차장)
기금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 방송법(방송발전), 식품위생법(식품진흥), 의료급여법(의료급여),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산업기반)
특정사업	도시철도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영화진흥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 () 안은 귀속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명칭

자료: 박영도 외,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법제연구원, 2002.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금은 주로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수수료, 회비 등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산하 기관이나 법정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준조세의 부담 정도

준조세가 주는 부담의 정도는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는데,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⁵⁾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평균 1억2,494만원의 준조세를 부담하여 세금보다 25.3%나 많았다. 이 규모는 중소기업 평균 당기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한다.

대기업이 내는 준조세 규모는 세금의 28%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⁶⁾가 대기업들로 구성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0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법정준조세는 1사당 평균 177억원을 부담하며, 기부금과 성금은 1사당 4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가 국민 전체의 부담을 얼마나 높이는지는 준조세에 대한 자료 미비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군인 및 공무원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차지한다. 그런데 사회보장기여금 외에도 준조세가 많으므로 모든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준조세부담 실태, 2005. 1. 12.

6)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정준조세의 부담실태와 개선방안, 2000. 8.

준조세를 포함한 총조세부담률은 현재의 국민부담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구 분	'00	'01	'02	'03	'04(예산)	'05(예산)
조세부담률 ¹⁾	19.6	19.7	19.8	20.5	19.8	19.7
국민부담률 ²⁾	23.6	24.1	24.4	25.5	25.0	25.1

주: 1) 조세부담률: (국세 + 지방세) / GDP

2)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 군인연금, 보훈기금, 건강보험, 산재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자료: 기획예산처

4. 외국의 준조세 실태⁷⁾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우리의 특별부담금과 같은 준조세는 거의 없다. 일본의 부담금 규모는 극히 미미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환경분야 등의 사업 재원은 세금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므로 특별회계나 기금을 따로 둘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주로 재산세를 통하여 건설 및 교통관련 재원을 조달한다. 일부 주에서는 교통사업을 위한 재원의 일부는 소비세와 통행료를 이용한다. 중앙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90년대말부터 부담금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사용자 혹은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조성된 재원은 일반회계에 귀속되

7) 손원의 외, 전개서(pp.278-400, p.446)를 주로 참고하였다.

거나, 일반회계로 귀속된 후 슈퍼펀드에 출연된다. 슈퍼펀드의 재원은 기부금, 세금, 채권, 사용요금 및 사용자부담금 등인데,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싱가포르는 부담금(Fees and Charges)이라는 명칭으로 환경관련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면허세, 등록세, 수수료(Licence and Permits)에 해당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구미국가에서는 의회예산주의가 지켜지고, 특별부담금을 사실상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나 기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⁸⁾

5. 준조세 심사 및 정비관련 제도

법정준조세의 부과요건과 절차, 징수방법과 사용내역 공개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2002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준조세 중에서 부담금은 신설하거나 부과요율을 인상할 경우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받고 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 내역은 국회에 보고된다.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예산 외로 운용되었으나,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이 2001년 12월에 제정되면서 예산과 같이 국회 통제를 받게 되었다. 2002년 1월부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8)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재정제도개혁방안, 2003. 8, 각국의 기금과 준조세에 대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었고, 2004년부터 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9개의 금융성기금⁹⁾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30% 이내에서 변경될 경우에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다.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과징금은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다른 세수와 함께 심사를 받으나, 신설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별도 심사나 징수 및 사용내용에 대한 국회보고는 없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제외한 법정준조세의 투명성은 매우 낮다.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단체 회비, 정부산하기관의 검사 수수료, 과징금 등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준조세로 인식도 되지 않으며, 그만큼 징수 및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은 떨어진다.

준조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불소급되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준조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9) 기금에는 9개의 금융성기금 외에 사회보험 6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기금), 사업성 42개, 계정성 5개(공공자금관리, 외국환평형, 공적자금상환, 양곡증권정리, 복권) 등이 있다

Ⅲ. 준조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민간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준조세의 기능과 범위, 정비방안에서는 정부와 민간간에 인식차가 상당하다.¹⁰⁾

준조세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준조세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준조세 문제의 핵심은 지출에서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금은 물론, 과밀부담금과 같은 유도성부담금의 순기능을 인정하여야 하며, 부담금과 기금을 관리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국회 심의가 이뤄지므로 준조세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다.¹¹⁾

준조세에 관한 다음의 주요 이슈들을 헌법의 관련조항과 시장경제 창달 측면에서 검토한다.

10) 준조세 정비와 관련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도 경제계에서 수차 건의하여 정부가 입법하였다.

11) 준조세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들의 기고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변제진, “부담금 증가, 과다하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2003. 8. 26. 신철식, “부담 주는 부담금, 순기능도 있다”, 중앙일보, 2005. 3. 28.

1. 부과요건과 사용내역의 투명성: 조세와 비교

헌법(59조)의 조세법률주의(‘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국세기본법 등에서 세금의 부과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해, 법정준조세의 부과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부처에서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준조세도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이며 국가에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면에서 조세와 다르지 않다. 조세와의 차이는 부과대상이 특정집단에 한정되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준조세 부과요건과 절차, 부과요율에서 조세와 달리할 이유는 없다.

현행 법정준조세 중에는 부과요건과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부과요건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부담금을 제외하면 사용내역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준조세의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세법률주의는 부담금, 성금과 같은 각종 준조세와 뇌물수수 등의 불법거래행위로 퇴색하였고, 조세법률주의의 다른 축인 재정민주주의¹²⁾는 국회에서 심의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도 부담금 등의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횟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례로 ‘교통안전분담금’이 부과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1999년에 위헌결정했다.

12) ‘의회없이 예산없다’는 원칙으로,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제도, 독립적인 감사의 의회보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헌법재판소 결정례 1999. 1. 28. 97헌가8).

헌법재판소는 ‘택지초과소유상한부담금’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택지소유한도를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 등으로 '99년에 위헌결정을 내렸다.¹³⁾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납입의무자, 모금대상 시설, 모금액의 상한과 산정기준 등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유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했다.

2002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100여 개의 부담금은 부과요건, 산정기준과 방법, 부과요율, 설치목적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부과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법정준조세는 여전히 많다. 감사원은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대상과 판정기준의 미비, 부과기준의 모호성, 감정기준 불명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을 요구하였다.¹⁴⁾ 법제처는 2005년에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과징금의 부과요건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13개 법령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¹⁵⁾

13) 이 밖에도 위헌결정을 받은 준조세에는 학교용지부담금(2005년), 문예진흥기금 납입금(2003년) 등이 있다.

14)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결과, '03. 5.

15) 법제처,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

한편, 국회도 많은 법에서 부담금 부과요건 등을 여전히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¹⁶⁾ 즉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14개 법이 아래와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부담금의 문제 조항(예시)

1.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술신용보증 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③ 금융회사 등은 그 유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생략)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안의 일부 '05. 2. 27.

16)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05. 6.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한다.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법정준조세에 관한 법제가 이 정도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 근거도 없이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하남시를 비롯한 77개의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법에 근거도 없이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2,484억원의 준조세를 부과했다.¹⁷⁾

한편, 준조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는 세금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협회비 등이 얼마나 징수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예산관련 부처에서도 파악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7,700여 건의 모든 내용이 상세히 규제개혁위원회의 홈페이지¹⁸⁾에 공개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준조세의 이 같은 불투명성은 국민의 알권리(헌법 21조, 10조)를 침해할 뿐 아니라, 준조세를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하고 준조세 정비도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2. 준조세의 경쟁제한성: 정부산하기관 및 법정단체의 경우

법정준조세는 대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징수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연간 1,500여 억원의 감독분담금 등으로 운영되

17) 감사원,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2005. 4.

18) 규제개혁위원회(www.rrc.go.kr)의 '규제등록현황' 참조.

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나 공단, 공사, 협회, 조합 등 정부산하기관들이 기업이나 금융회사들¹⁹⁾로부터 징수하는 준조세 규모도 상당하다. 부담금의 경우를 보면 <표 7>과 같이 징수한 금액의 12%인 1조1,596억원을 정부산하기관들이 사용한다.

<표 7> 정부산하기관의 부담금 사용내역(2004년)

(단위: 억원)

부담금명		금액	귀속기관
손해배상보장사업부담금		1,362	대한손해보험협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1,050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자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525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252	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금		181	환경시설관리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105	한국화재보험협회
해양오염방지부담금		58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부담금		11	해당 관광단지(보문/중문)
쓰레기유발부담금		11	해당 도매시장(서울, 구리, 강릉)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7	개별회원제골프장운영자 (수수료, 부가세 등)
예치금	산립복구비용예치금	6,958	일정기간 예치 후 대부분 환금
	골채취복구예치금	595	
	농지복구비용예치금	298	
	산립복구하자보수보증금	135	
	소하천소요공사비에치금	43	
	원상회복예치금	5	
합계		11,596	

자료: 기획예산처, 『04년도 부담금종합보고서』, 2005.

19) 증권사들은 적자에 허덕이지만,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수수료 등의 준조세를 받아쓰고 남은 돈만도 1조원 가까이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곤, “배고픈 증권사, 배부른 증권유관기관”, 한겨레 2003. 1. 15.

그런데 법정준조세의 범위를 법에 납부 의무가 규정된 사업 자단체 회비²⁰⁾나 정부산하기관의 수수료²¹⁾ 등으로 넓히면 이들 기관에서 징수하는 준조세는 엄청나다. 법정단체를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이 500여 개인데,²²⁾ 회비나 수수료로 조성하는 연간 예산이 평균 2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들 기관이 징수하는 법정준조세 규모는 10조원이 된다.

문제는 이들 산하기관(단체)들이 징수하는 준조세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부담만이 아니다. 법정단체²³⁾나 정부산하기관들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나 사업 효율이

20) 1개 기업이 여러 개의 법정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체와 관련된 주요 법정단체로는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건설감리·회, 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상 건설교통부), 전기공사협회(산업자원부), 전기통신공사협회(정보통신부) 등이 있으며, 근거법에 따라 정액 혹은 실적에 비례한 회비를 납부한다.

21) 기업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검사(소방법 17조의2),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조), 시설안전기술공단의 특수교량 등 1종 시설물(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8조),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유독물 수출입 신고와 교육 등(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2) 정부산하기관에는 위탁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 보조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데, 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법정단체)가 3,000여 개이다.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정부산하기관의 최근 실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似行政規制 整備指針』(2005. 1) 및 <부록 4> 참조.

정부산하기관 현황

	1993	1996	1998. 8	2001
인원(명)	243,121	243,958	-	-
예산(억원)	560,089	937,345	-	-
기관수	212	261	705	537*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산하기관, 제대로 운영되나』, 2002, 5에서 재인용

23)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협회)를 ‘임의단체’라고 하고, 민법 이외의 특별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법정단체’라고 한다.

떨어질 뿐 아니라, 진입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 안전검사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도 지체시킨다.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이들 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취임하여 기업활동에 간섭하므로 민간기업의 창의나 활력을 위축시킨다.²⁴⁾

각 부처는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임의단체)에도 감독권을 가지므로, 이들 단체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회비결정이 자율적이므로 민간활동을 직접 제한하지 않으며, 회비는 준조세가 아니다. 그런데도, 각 부처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마련이나 정부 간섭의 편의 등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굳이 법정단체로 설립하는데, 이는 헌법(119조)에서 보장한 자유경쟁질서에도 위배된다고 하겠다.

최근 감사원의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는 정부산하기관의 독점적 업무취급으로 인한 문제의 일단을 보여 준다. 노동부 소관 5대 기금²⁵⁾을 운영하는 정부산하기관들이 산재보험료는 800억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료는 5조 이상 초과 징수했으며, 휴업급여는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한다.²⁶⁾ 그런데 산재보험과 같이 민간 보험회사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경쟁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4) 이 같은 구조를 ‘빨대경제’라고도 한다. 이인실, “한국의 빨대경제”, 헤럴드경제, 2002. 3. 15.

25)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6) 감사원, ‘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2005. 6. 9.

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들은 정부 사무의 독점적 수탁, 가격담합, 강제적인 회원가입, 형식적인 보수교육과 교육비 징수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²⁷⁾ 이러한 이유로 '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155개 사업자단체 설립 및 가입강제 폐지, 등록업무의 회수, 보수교육 폐지, 설립조건 개선 등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²⁸⁾

사실상 준조세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여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기관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정비한다면 준조세 부담과 행정규제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하에서 공공개혁의 고삐가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서 다시 법정사업자단체들이 자격자와 직원의 보수교육을 부활 혹은 강화시키고 유사행정규제를 만들어 회원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²⁹⁾ 임의단체를 법정단체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산하기관 신설을 억제하고 정기적으로 산하기관의 기능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2003년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제외되어 동법은

27)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과 같은 금융관련 협회도 회비로 운영되면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 회원금융회사들의 상전역할을 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금융유관단체들, 바뀌어야 한다", 2005. 8. 19.

28)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0.

29)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7월 공사, 공단, 협회 등 509개의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1,006건을 정비하였다. 국무조정실,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2005. 7. 5.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빠졌으며, 법적용 대상은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는 산하기관으로 대폭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 기준

- ① 정부의 출연금이 최근 3년 평균 50억원 이상인 기관
 - ② 정부가 출자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관
 - ③ 정부출연 및 보조금과 정부위탁, 독점사업 수입금의 합이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
-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상조회 등)과 외교안보, 학술연구, 법률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됨.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기관장을 임명하고 정부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며, 준조세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은 500개를 상회하는 데 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은 88개에 불과하다.³⁰⁾

이 같은 정부산하기관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계열사 판단기준에 비하면 너무나 제한적이다.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그룹 회장)이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50%를 임명하거나,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로 편입된다.³¹⁾ 계열사들

30) <부록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기관 참조.

31)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계열사 판단기준은 친인척을 포함한 '지분 30% 기준'과 '지배력 기준'을 병행하는 데 비해 정부산하기관은 출연금과 보조금 50억원 이상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①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
 ② 조직변경이나 신규사업 투자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은 공정거래법과 20여 개 법에서 규제를 받으며, 실체는 계열사인데 계열사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위장계열사’가 되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의 기준으로 보면 정부산하기관 중에 ‘위장 정부산하기관’이 많은 것이다.

3.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많은 부처들은 정부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었다. 그 결과 기금과 특별회계가 기형적으로 늘어나, <표 8>과 같이 우리나라 재정은 일반회계 1개와 특별회계 19개, 기금 57개 등 ‘77개의 지갑’으로 구성되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규모도 엄청나다. 기금은 일반회계의 2.4배 규모이며, 특별회계의 규모도 일반회계의 절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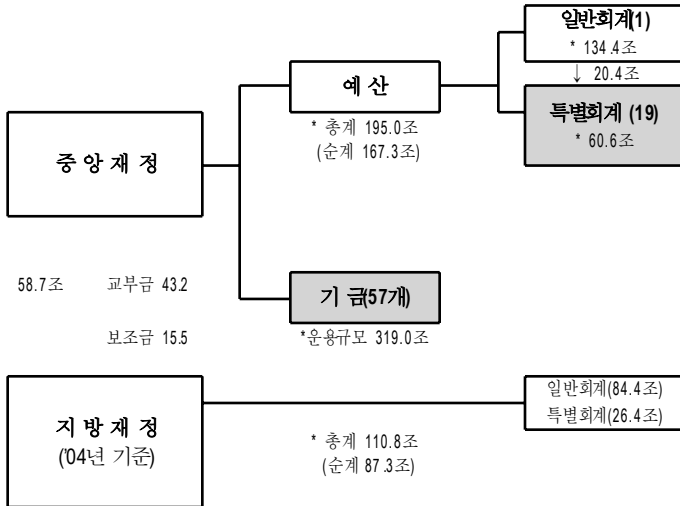
재정이 77개의 칸막이로 운영된 결과, 예산은 부족하여 SOC 확충 등 필요한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데 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남아도는 등 재정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의 투명성도 약하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재정구조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반드시 통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³²⁾

③ 지배하는 회사와 인사교류(임원 겸임, 복직 등),

④ 통상적 범위를 초과한 자금, 자산, 상품, 용역거래, 채무보증, 영업상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판정한다. 현재 44 기업집단에 685개사가 지정되었다.

32) 고영선·조성일,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에서 재인용,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

<표 8> 우리나라 재정구조(2005년 예산) → “77 개의 지급”



주: 1) 순계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간 진출입)를 제외한 금액

2) 교부금(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9.13%, 교육교부금: 19.4% + 교육세 전액)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 2005. 5. 20.

“한국의 복잡한 예산구조는 여타 OECD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투명성을 극도로 저해시키고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일반회계와 일부 신탁기금(Trust Fund)³³⁾으로 통합시키고, 여기서 제외되는 여타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하거나, 공기업(기업특별회계)으로 분류하여 재정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합에 대해 관련부처들이 반발할 것이나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IMF, Further Reforms in Fiscal Management 2001)

예산처, 2004. 9. 13.

33) 신탁기금(Trust Fund)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의미한다

<표 9> 특별회계의 수입구조(2005년)

(단위: 조원)

구분	해당 특별회계	예산	주세입원
특정 수입으로 운영 (14개)	부담금(3)	에너지, 환경개선, 자동차교통관리	개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범칙금 등
	수수료(4)	등기, 특허관리, 국립의료원, 우체국보험	등기수수료, 특허수수료 등
	목적세(3)	농어촌특별, 교통시설, 국가균형발전	농특세, 교육세, 주세
	기 타(4)	국유재산, 교도작업, 농어촌구조개선, 군인연금	국유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기여금, 보험료 등
특정자금 운용(1개)	재정용자	14.9	공자기금 예수금
사업 운영(4개)	통신사업,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7.4	사업수입
계	19개	60.6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개서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19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에너지, 환경개선, 자동차교통관리는 부담금과 범칙금으로 운영되며, 등기, 특허관리 등 4개의 특별회계는 수수료로 운영된다. 기금의 준조세 의존도는 특별회계보다 더 심하다.

그런데 기금과 특별회계는 한번 설치되면 여건이 바뀌어도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준조세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원이 있으면 존치시킬 명분을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환경보전, 복지증진, 농어민과 중소기업 보호 등 명분이 있는 사업은 수없이 많다. 기금과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됨에 따라 ‘준조세 부담 증가 → 재정효율성 저하와 공공부문 비대화 → 재원 확보를 위한 준조세 증가’라는 악순환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정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정부의 재

정개혁 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재정세계개혁의 하나로 2004년 9월에 특별회계는 11개를 통폐합하여 8개만 남기고, 기금은 18개를 통폐합하여 39개만 존치시키기로 했다³⁴⁾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이 같은 통폐합 계획은 크게 후퇴하여 특별회계는 8개, 기금은 7개만 통폐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³⁵⁾ 재원은 확보되어 있고 준조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조세만큼 강하지 않은 가운데, 일반회계와 별도의 지갑을 계속 가지려는 각 부처의 반발을 대통령소속 위원회라도 막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재정이 단순화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은 없고, 그래서 준조세를 따로 징수할 필요도 없다.³⁶⁾ 준조세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세금으로 징수하여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조세와 별도로 유도성 준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인정한다.³⁷⁾ 하지만, 조건을 붙여 두었다. 유도성 준

34) 고영선·조성일, 전거서

35) 바뀐 정비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 2005. 5. 20.

	현행	정비방안				정비 이후	비고
		구분	폐지	통합	계		
특별회계	19	당초계획(04.9)	6	5(7→2)	11	8	당초계획보다 3개 증가
		수정(05.5)	6	2(5→3)	8	11	
기금	57	당초계획(04.9)	10	8(11→3)	18	39	당초계획보다 11개 증가
		수정(05.5)	7	-	7	50	

36) 손원의 외, 전거서, p.443.

37)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국민의 행위를 유도·조정하고 정책목적 달성을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 부담금을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조세를 징수하려면 준조세를 징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책임있는 집단이 있고, 준조세는 이들 특정집단에만 부과되고, 그 돈은 이들 납부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그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유도성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³⁸⁾

○ 헌법적 한계: “적어도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 사회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요건: “①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② 징수된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하며,

③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1999. 5. 27. 98헌바7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01. 11. 29. 2000헌바23;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2002. 10. 31. 2001헌바88).

○ 형평성 내지 조세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기준: ①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고(집단의 동질성),

②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것은 아니다(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정, 2005. 3. 31. 2003헌가20)”

38) 박영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제도 정비방안’,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제2차 공청회, 2005. 6. 2.

인정될 만한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집단적 책임성),
④ 특별부담금의 수입이 특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집단적 효용성)(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003. 12. 18. 2002헌가2).

그런데 현행 법정준조세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준조세가 적지 않다. 개발부담금과 같은 조세성부담금이 그렇고, 과밀부담금도 책임 및 부담주체와 혜택을 보는 대상이 다르므로 그러하다. 2004년에 자동차 노동조합들이 완성차회사가 순이익의 5%를 출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와 빈민층 자녀, 지역복지센터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여, 주무부처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공론화하였는데, 만약, 이 기금이 도입되었더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달라 분쟁을 초래했을 것이다.

4. 근거규제의 적절성: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의 경우

법정준조세로 간주하지 않는 법정단체 회비와 정부산하기관 수수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듯이, 법 위반에 대한 대가(제제)인 과징금에도 이 같은 문제들이 있다.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인 행정규제 중에는 규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하나의 기업행위에 대한 부처간의 중복적 규제, 경제여건 변화로 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규제, 행위에 비해 규제강도가 지나친 규제, 국제기준이 아닌 규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부당내부지원 금지는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해결할 사안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며, 외국에서는 하지 않는 규제이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도 막을 수 있다. 기업이 어떤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인지를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공정거래 사건 중에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한 사건 중에서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가 50% 안팎일 정도로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규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업이 승소하면 과징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업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국민들의 기억을 지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규제가 투명하지 못하면 각 부처에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은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실상 행정벌³⁹⁾인 과징금은 헌법 제12조의 '처벌'에 해당하므로, 조사발동여건에서부터 조사과정까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규제를 둔 근거법에는 규제의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만 두고,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해당부처에서는 기업에 대한 조사 착수 시 어떤 기업이 조사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이 관행인데, 국민들에게는 이들 기업들은 마치 탈법행위를 하여 조사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기업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다.

이 밖에, 농지전용부담금은 도입 당시와 달리 쌀 소비 급감

39) 행정벌에는 형벌인 행정형벌,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법,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행위 취소, 과징금·법위반 사실 공표 등이 있다

과 쌀시장 개방, 환경보전에 따른 간척사업의 한계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었다.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중복되어,⁴⁰⁾ 기업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2중으로 부담한다.

둘째, 과징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재원조성 취지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의무이행의 확보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금전벌), 부당이득 환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등 행정제재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과징금이 특정부처의 기금에 귀속되고, 부처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늘어나면서, 재원조성 용도의 과징금이 늘고 있다.⁴¹⁾

이 밖에도 주무부처의 행정처분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⁴²⁾

40) 농지와 임야 등이 개발되어 지목이 바뀌면 다시 취득세(취득가의 2%)를 내야 한다.

4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예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대외무역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영화진흥법, 은행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증권거래법, 청소년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부당이득 환수는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영업정지처분의 대신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42) 박정훈, 「협의를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4호, 2001.

IV. 준조세 관련 제도개선 방안

1. 준조세 정비가 부진한 이유

법정준조세에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증대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실상 조세이지만 부과조건 등이 세금만큼 투명하지 않고 국회 통제도 세금만큼 엄격하지 않다. 그 결과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 등이 엄격한 심사없이 설립되어, 공공부문의 비대화, 민간활력 위축, 자유경쟁 제한, 경제효율 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법정준조세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의 마련은 물론이고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각 부처가 준조세를 신설하거나 존속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환경보전, 기술개발, 안전과 복지증진, 중소기업 진흥, 농축산업 발전, 대체에너지 개발, 국토보전 등 명분 있는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 준조세를 거둘 수 있는 곳은 많다. 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유도성부담금 등으로 준조세 징수의 명분을 세우기도 용이하다.

돈이 있는 곳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이고, 이들은 그 돈이 계속 운영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해당부처, 관련 학계, 사업에

참여하는 업계의 이해는 잘 합치된다. 그만큼, 기금이나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이 일단 설립되면 정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2. 준조세에 관한 제도정비 방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준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조세를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먼저, 준조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작은 정부’ 구현이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각종 공공부문의 기능을 상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 법정단체를 포함한 정부산하기관 설립에 대한 심사 강화, 기능을 다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민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민간 위탁과 경쟁체제 구축,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을 지원하는 각종 법률과 규제의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음지에 놓여 있는 준조세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준조세 실태가 어떤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부분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따라서 각종 법정준조세를 한 부처에 등록시켜 주무부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가칭)⁴³⁾ 제정이 시

43) 이 같은 취지에서 법제연구원은 ‘租稅外 金錢支給義務制度의管理와 運營에관한法律’(가칭)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오준근, 전계서

급하다. 동법에는 각종 법정준조세의 등록과 국회보고 및 공개, 준조세 신설 및 부과율 변경에 대한 심사, 정기적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준조세에도 조세와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통제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⁴⁴⁾

이 같은 법률에 따라 법정준조세를 각 부처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나 거두어,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준조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있는 해법은 쉽게 도출된다. 이는 '90년대 중반 역대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차적 규제만 정비되었으나, '97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규제가 대폭 정비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⁴⁵⁾

준조세가 양지로 나오면 해법은 쉽게 도출된다. 법정준조세의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이 투명하지 않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된 것은 투명하게 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특별부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나, 사실상 조세로 굳어진 조세성부담금은 조세로 전환시키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부처별로 혹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부과되는 것

44)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거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가진 법률은 많다. 예: 행정규제기본법('규제의 투명성 확보'), 부담금관리기본법('부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자금 조성, 운영, 관리의 투명성 제고'),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업무수행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변호사법('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기함'), 전자정부법('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을 높여'), 한국은행법('업무수행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45)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등록제도'에 의하여 '98년 10,000여 개의 규제가 인터넷에 공시된 이후 규제개혁이 본격 추진되어 현재 규제는 7,000여 건으로 줄어들었다.

은 일원화하고, 환경변화로 인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하면 된다. 준조세에 대한 평가는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헌법에서 규정한 재정민주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확립,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셋째, 정부산하기관과 법정단체의 기능과 예산, 성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범위를 법정준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과 사실상 정부에서 지배하는 산하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하기관과 법정단체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능을 다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진입규제를 풀고 민간에 넘길 것은 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 안전검사 등과 같이 정부산하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진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정부의 위탁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법정단체는 임의단체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과징금과 같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준조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중복적인 규제는 폐지하고, 각 부처에서 행정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정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법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이나 준조세는 적게 걷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제일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법률을 제정하고 법제를 보완하는 데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은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또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공공부문의 이상 비대화 방지, 재정민주주의 확립은 국회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참고문헌 |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결과 2003. 5.
- _____,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담금 기부금품 등 부과모금 및 집행 실태 2003. 8.
- _____,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2005. 4.
- _____,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노동부소관 5개 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2005. 6. 9.
- 경향신문, “예산 대해부(기획연재)”, 2004. 12. 12 등
- 고영선, 『재정통계선진화 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고영선·조성일,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방안.』,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방안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예산처 공동주관 2004. 9. 13.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04. 2. 10.
- 곽태원, 『財政運營改善方案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국회 예결위 연구용역자료, 2002. 12.
- 국무조정실, “似行政規制 整備指針” 2005. 1.
- _____,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2005. 7. 5.
-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5. 6.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입세출 결산보고 검토, 2003. 6.
- 국회 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재정제도개혁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8.
- 규제개혁위원회, 『2000년 규제개혁백서』, 2001. 6.
- 권해상·우병렬, 『재정관련법령의 정비방안.』, 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5호, 2003.

- 기획예산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4. 10.
- _____,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5. 6.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2004년도 및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판람』, 2005. 2.
-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평가단, 『부담금 평가』, 기획예산처 2003. 6.
- 김병섭, 『정부산하기관 개혁평가와 과제』, 김대중정부 2년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00. 8. 25.
- 김성수, 『예산법의 기본원칙과 재정법의 과제』, 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5호, 2003.
- 김재광,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법제연구원, 2004. 10.
- 김정훈, 『국가 재정 관련법안에 대한 의견』, 국가재정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국회 운영위원회, 2005. 4. 18.
- 박병식 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2.
- 박영도,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부담금제도 정비방안』, 국회규제개혁특별위원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관련 2차 공청회 2005. 6. 2.
- 박영도·김호정,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법제연구원 2002. 8.
- 박정훈, 『협정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서울대학교 법학』, 41권 4호, 2001.
- 법제처,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재량행위 투명화추진방안 2005. 2. 27.
- 변재진, “부담금 증가 과다하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2003. 8. 26.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국회 예결위 연구용역자료, 2003. 4.
- 소병희,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원인분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자료, 2003.
- 손원익 외, 『기업의 준조세부담과 정책방향』, 조세연구원, 2004. 12.
- 송희준, 『정부산하기관의 현황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권 2호, 2002.

- 신철식, “부담주는 부담금, 순기능도 있다”, 중앙일보, 2005. 3. 28.
- 오준근, 『조세의 금전지급 의무제도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법제연구원, 1998. 12.
- 옥동석,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조세연구원, 2004. 12.
- _____, 『통합재정의 범위 및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연구』, 사회보험연구소, 국회 예결위 연구용역자료, 2004. 1.
-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정준조세 부담실태와 개선방안』, 2000. 8.
- _____,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 과제』, 2005. 3.
- _____, 『정부산하기관, 제대로 운영되나』, 2002. 5.
- _____,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와 시사점』, 2003. 9.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계개혁 로드맵』, 2003. 7. 29.
- _____, 『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 2005. 5. 20.
- 정영화, 『헌법상 재정민주주의 및 통제방안 - 예산과정에 대한 공공선택 이론-』, 법제연구원, 『國家財政 關聯法制的 懸案과 課題 워크숍 자료』 2004. 12. 15.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준조세부담 실태』, 2005. 1.
-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2005. 8.
- 황성현, 『특별회계 기금제도개혁의 평가와 향후과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5. 5. 26.

<부록 1> 외국의 특별회계와 기금 실태⁴⁶⁾

(1) 특별회계

영국

- 국가대부자금법(우리나라 재정융자특별회계 성격)
- 특별회계의 설치를 재정투융자계획에 따른 용자목적에 국한시키고 있음

미국

- 연방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연방정부 보유자금을 계리하는 연방자금과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이나 신탁계약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신탁자금으로 구분하며, 두 예산을 합해 통합예산으로 부르고 있음
- 연방자금 중 특별자금(Special Funds)은 우리나라 특별회계와 유사

프랑스

- 특별회계는 재정법에 의해서만 편성가능(재정조직법 §19)
- 예산은 일반예산, 부속예산, 특별회계로 분류되는데, 부속예산도 조폐, 전신 등 행정부처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를 계리하여 우리의 특별회계와 비슷함. 부속예산이 특별회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설치는 특정 공공서비스 생산에만 국

46) 국회 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전게서

한시키고 있음

독일

- 일반회계·특별회계의 구분은 없고 특별재산(영조물법인) 및 공법인(연방 및 주 업무를 직접수행)의 경우 보조금 또는 교부금만을 세출로 계상함

일본

- 법률로 특별회계 설치(재정법 §13)
- 특별회계의 운영목적 종류는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의 경우와 매우 유사

(2) 기금

영국

- 국민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 있으며, 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음

미국

- 연방자금 중 연방신탁자금은 우리나라 기금과 유사

□ 프랑스

- 사회보장기금, 실업보상기금 등이 있음. 유로화의 출범과 함께 외국환안정기금은 폐지

□ 독일

- 독일통일기금 등 7개 기금이 연방의 일반예산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 독일통일기금의 경우 의회의 통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의 단일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 국채관리기금, 외국환자금 등이 용어상으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로서 관리됨

<부록 2> 특별회계와 기금실태와 정비계획

1. 특별회계명 및 설치근거법

(05. 5월 기준)

소관부처	특별회계명	설치근거법	제정	정비계획
건설교통부	<u>1. 교통시설</u>	교통시설특별회계법	'95.12. 6	폐지
경찰청	<u>2. 자동차교통관리개선</u>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92.11.25	"
국방부	<u>3. 군인연금</u>	군인연금특별회계법	'63. 1.28	군인연금 기금
농림부	4. 양곡관리	기업예산회계법	'61.12.31	
	<u>5. 농어촌구조개선</u>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91.11.22	통합
	<u>6. 농어촌특별세관리</u>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94. 8. 1	"
대법원	<u>7. 등기</u>	등기특별회계법	'93. 6.11	폐지
법무부	8. 교도작업	교도작업특별회계법	'61.12.23	
보건복지부	<u>9. 국립의료원</u>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68. 3.12	폐지
산업자원부	10. 에너지및자원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94. 3.24	
	11.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04. 1.16	
재정경제부	<u>12. 국유재산관리</u>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93.12.31	폐지
	<u>13. 재정융자</u>	재정융자특별회계법	'96.12.12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보통신부	<u>14. 통신사업</u>	기업예산회계법	'61.12.31	분리(2)
	15. 우체국보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00. 1.12	
조달청	16. 조달	기업예산회계법	'61.12.31	
특허청	<u>17. 특허관리</u>	특허관리특별회계법	'86.12.31	폐지
행정자치부	18.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 법률	'99. 1.29	
환경부	19. 환경개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94. 1. 5	

2. 기금명 및 설치근거법

(05. 5월 기준)

소관부처	기금명	설치근거법	설치	비고
건설교통부	1.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1981	
과학기술부	2.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법 제10조의3	1996	
	3.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	
교육인적자원부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	
	5. 사학진흥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1989	
국가보훈처	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7조	1967	이관
	7. 보훈	보훈기금법 제3조	1981	
국무총리실	8.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	
국방부	9. 군인연금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	1963	
	10. 방위산업육성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	1979	폐지
	11. 군인복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	1996	
노동부	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1990	
	13. 근로자복지진흥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8조	1993	
	14.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66조	1995	
	15. 임금채권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	1998	
	1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2002	
농림부	17. 축산발전	축산법 제35조	1974	
	18. 양곡증권정리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4조	1994	
	19. 농지관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90	
	20. 농산물가격 안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	
	21. 쌀소득보전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2003	
	22.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10조	2004	
문화관광부	23.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항	1973	이관
	24. 관광진흥개발	관광기본법 제14조	1973	
	25. 국민체육진흥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1989	
	26. 청소년육성	청소년기본법 제63조	1989	
	27. 문화산업진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	1999	폐지
방송위원회	28. 방송발전	방송법 제36조	2000	

소관부처	기금명	설치근거법	설치	비고
보건복지부	29.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22조	1988	
	30. 응급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9조	1995	페이지
	31. 국민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	
산업자원부	32. 특정물질사용합리화사업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	1991	
	33. 전력산업기반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	
여성부	34. 여성발전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1996	페이지
외교통상부	35. 국제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	
재정경제부	36. 외국환평형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1항	1967	
	37. 대외경제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3863호) 제3조	1987	
	38. 공공자금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	
	39. 공격적자금상환	공격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제1항	2003	
정보통신부	40. 정보통신진흥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1996	
중소기업청	41.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1978	
통일부	42. 남북협력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0	
해양수산부	43. 수산발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	1999	
행정자치부	44.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제73조	1960	
환경부	45. 한강수계관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법률 제20조	1999	
	46.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률 제31조	2002	
	47. 낙동강수계관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	2002	
	48. 금강수계관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1조	2002	
[금융성기금]				
금융감독위원회	1. 부실채권정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1997	
기획예산처	2. 산업기반신용보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1994	
산업자원부	3. 수출보험	수출보험법 제30조	1968	
재정경제부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1972	
	5.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	
	6.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	1985	페이지
	7.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1986	
	8. 주택금융신용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1987	
	9.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제24조	1996	

<부록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 기관

(2005년)

부처	계	대상기관
산자부	17	산업기술시험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출보험공사, 요업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독립기념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생활체육협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한국청소년수련원, 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문광부	1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부산교통공단
정통부	8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증권예탁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건교부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재정부	6	한국마사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축산물등급판정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부	6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부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만공사
농림부	4	한국과학기술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복지부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해수부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과기부	3	경철청
행자부	3	소방청
환경부	3	중기청
보훈처	2	합 계
금감위	1	88
경찰청	1	
소방청	1	
중기청	1	

주: 밑줄친 기관은 2005년에 새로 법적용을 받는 기관임.

자료: 기획예산처

<부록 4> 부처별 준공공기관 현황⁴⁷⁾

□ 국무총리실

기관구분	기 관 명
경제사회연구회 (15)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10)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인문사회연구회

□ 재정경제부

기관구분	기 관 명
투자기관(1)	한국조폐공사
출자기관(3)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기관(7)	예금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연연구기관(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47) 자료: 국무조정실, 『유사행정규제 정비 지침』, 2005. 1.

교육인적자원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위탁기관(2)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출연기관(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비영리법인(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통일부

기관구분	기 관 명
보조기관(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교육협의회

외교통상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위탁기관(1)	한국국제교류재단
출연기관(2)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국방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위탁기관(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군인공제회
보조기관(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출연기관(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 산업자원부

기관구분	기 관 명
투자기관(5)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출자기관(2)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보조기관(1)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기관(3)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석유품질검사소
출연기관(6)	한국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석탄합리화사업단,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자회사(3)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안산도시개발(주), 한국가스기술공업
비영리법인 등 (435)	무역정책심의관: 대한상사중재원 등 29개 단체 국제협력투자심의관: 한국의국인기업협회 등 19개 단체 자원정책심의관: 한국난방시공협회 등 22개 단체 에너지산업심의관: 대한석유협회 등 22개 단체 산업정책국: 산업정책연구원 등 91개 단체 산업기술국: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77개 단체 자본재산업국: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59개 단체 생활산업국: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102개 단체 기타: 한국전력거래소 등 14개 단체

□ 과학기술부

기관구분	기 관 명
보조기관(4)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위탁기관(1)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출연기관(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비영리법인 등 (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개발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재개발사업단
기초기술연구회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7)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법무부

기관구분	기 관 명
보조기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更生보호공단

□ 정보통신부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연구 출연기관(5)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조기관(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탁기관(4)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재)한국인터넷정보센터,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비영리법인 등 (2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재)체성회, (재)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재)우정사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 공제조합, (재)한국통신문화재단,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재)우정복지협력회, (사)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재)강원정보영상진흥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인천광역시장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전산업협동조합, 한국ASP 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출연연구기관(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비연구출연 연구기관(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치정보화조합
위탁기관(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비영리법인(4)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한국방재협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청

기관구분	기 관 명
위탁기관(4)	충포화악안전기술협회, 경비협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비영리법인(3)	경비지도사협회, 열쇠협회, 경찰공제회

□ 문화관광부

기관구분	기 관 명
투자기관(1)	한국관광공사
위탁기관(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진흥(주)
보조기관(12)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언론재단, 대한체육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재)한국청소년수련원
비영리법인 등(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노동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출연기관(8)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위탁기관(4)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보건복지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위탁기관(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비영리법인 (103)	<p>대한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계가노인복지협회, 한국경로복지회 로또공익재단, 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한국장애인협회, 전국공무원노원협회, 전국훈인예식장업연합회, 한국결혼상담소협회, 한국주례전문인협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보장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X-선검진협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각업치료사협회, 한국의료기관세탁물처리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실업중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바텐더협회,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제합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제염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연식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해태가공업협동조합, 한국동조립식품공업협동조합, 여수오천단지해산물가공업협동조합,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제빵제과공업협동조합,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한국맥아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수출입협회,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대한영양사회, 대한보건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운동지도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위킹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대한위생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여자치과 의사회, 대한치과병원협회, 국립암센터, 한국골수은행협회</p>

□ 환경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위탁기관(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협회,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수도협회
출연기관(3)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보조기관(6)	국립공원협회, (사)한국자연보전협회, (사)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환경마크협회

□ 농림부

기관구분	기 관 명
투자기관(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비영리법인 등 (5)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대한양계협회

□ 해양수산부

기관구분	기 관 명
출자기관(1)	부산항만공사
보조기관(2)	(특) 선박검사기술협회, (특)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위탁기관(5)	한국해운조합, (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비영리법인 등 (1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항만연수원, 한국검수검정협회, 한국항만하역협회, (사)한국선급,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 (사)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한국어항협회, 수협중앙회

□ 여성부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1)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건설교통부

기관구분	기 관 명
투자기관(4)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기관(4)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주택저당채권유통화주식회사
보조기관(2)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출연기관(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영리법인 등 (4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복합운송주선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 한국항공진흥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품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금융감독위원회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 한국증권금융(주), 선물협회, 투신협회, (주)코스닥증권시장,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종합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회계연구원, 전국신용정보업협회

기상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3)	한국기상협회, 한국기상전문인협회, 한 중대기과학연구센터

국세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2)	대한주류공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세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1)	대한관세협회

철도청

기관구분	기 관 명
출자기관 (6)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경인 CD, 철도광고, 한국철도종합서비스, 파발마, 민자역사
비영리법인 등 (11)	홍익회, 한국철도기술공사, 한국철도선로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운전기술헌회, 철도회원협력회, 한국철도물류협회, 철도하역협회,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

문화재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보조기관(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찰청

기관구분	기 관 명
위탁기관(4)	충포화약안전기술협회, 경비협회,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등(3)	경비지도사협회, 열쇠협회, 경찰공제회

농촌진흥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 (4)	(사)한국농자재사업협회, (사)한국4-H본부, (사)생활개선중앙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산림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 (31)	한국양묘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산물연료협회, 한국목재칠연합회, 대한민국자생관협회, 한국분재조합, 한국자생식물협회, 한국산수보전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 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전국산림보호협회, 자생식물단체연합회, 한국임업기계화협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한국꽃누리미협회, 한국아트플라워협회, 한국닥나무협회, 한국반재배자협회, 한국수액협회, 대한산악스키협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웃나무협회,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한국표고톱밥버섯재배자협회, 한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 해양경찰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 (8)	(사) 한국해상방재사업자협회, (사)한국수상대저안전, (사)대한드래곤보트협회, (사)한국해양구조단, (사)한국해양구조단, (사)한국유창청소협회, (사)대한래프팅협회, (사)한국라이프세이빙협회

□ 특허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비영리법인 등(1)	한국발명진흥회

□ 중소기업청

기관구분	기 관 명
보조기관(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탁기관(2)	산업기술시험원, 싱글 PPM품질혁신추진본부(대한상의)
출연기관(3)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중소기업인증센터,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비영리법인 등 (30)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한국CMS 협회, 한국원적외선협회, 중소기업진흥재단,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소호진흥협회, (사)한국중소유통연구센터, (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협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한국교복협회, (사)한국경영기술건설턴트협회, (사)경영기술개발원, (재)한국경영컨설팅연구원, (사)한국건설턴트진흥원, 중소기업경영전략연구원, (사)중소기업진흥회, (사)전문대학중소기업신지식경영인협회, (사)전문대학중소기업협력회, (사)한국PL 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산학연전국협의회, (사)한국분석기기제조협회, (사)한국테크노마트, 전국이업종교류회연합회

□ 국가보훈처

기관구분	기 관 명
보조기관(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9혁명공로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위탁기관(1)	88관광개발(주)

□ 방송위원회

기관구분	기 관 명
출자기관(2)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위탁기관(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비영리법인 등(1)	방송문화진흥회